

●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 - 131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서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서울지방우정청 훈령 제740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서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2인 관서 실효적 지원방안 추진계획」 수립·시행 관련, 직원의 부재 등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서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
→ 「서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

나. 창구업무 취급시간 근거 규정 현행화(안 제1조)

- (추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4조(근무시간)
- (삭제)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7조(식사시간)

다. 창구업무 취급시간 명시, 취급시간 조정 이유 한정 조항 개정 (안 제2조~제3조)

- (취급시간 명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 (한정문구 변경) ‘점심시간 휴무’ → ‘취급시간 조정’

라. 창구업무 취급시간 공지 근거 규정 추가(안 제4조1항)

- ‘제2조에 따라’ →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마. 점심시간 휴무 시행 관서 현행화(별표 1)

바.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시 고객 안내문 정비(별표 2)

3. 시행일 : 훈령 발령일

4. 의견 제출

「서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전화(팩스), E-mail, 우편

o 전 화 : 02-6967-9232 (Fax: 0505-005-1102)

o E-mail : ekwl99@korea.kr

o 주 소 :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6, 서울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공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 개정(안)

「서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서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명

“「서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을 “「서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으로 한다.

2. 조 문

제1조 중 “등) 우정사업본부”를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로,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7조(식사시간)”를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로, “포함) 중 점심시간 휴무를 실시하는 관서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창구업무 취급시간) 서울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취급시간이 조정된 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안내문 등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실 벽면, 출입문 등 고객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제000호, 2024. 6. 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	「서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 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 무시간) 및 제7조(식사시간), 우 편업무규정 제3조(창구취급시 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고 시 제5조(창구업무 취급시간)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 관내에 위 치한 관서(출장소 포함) 중 점 심시간 휴무를 실시하는 관서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 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 제4조(근무시간), - ----- ----- ----- ----- -----포함) 의 창구업무 취급시간----- ----- ----- -----.
제2조(창구업무 취급시간) 서울지 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 (출장소 포함) 중 점심시간 휴무를 실시하는 관서의 창구업무 취급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창구업무 취급시간) ----- -----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로 하며, 취급시간이 조정 된 관서는 별표 1-----.

제3조(점심시간 휴무 조정) 제2조에 도 불구하고 <u>긴급한 상황</u>이 <u>발생하는 등</u> 우체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u>점심시간</u> <u>휴무를 1시간 범위 내에서</u> 조정 할 수 있다. 단, <u>점심시간 휴무</u> <u>를 조정하였을 경우에는 서울지</u> <u>방우정청장에게 사후 보고하여</u> <u>야 한다.</u>	제3조(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 ----- <u>특별한 상황</u>이 <u>발생하여</u> ----- ----- <u>창구업무</u> <u>취급시간을</u> ----- --- <u>있으며, 이 경우 서울지방</u> <u>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제4조(취급시간 공지) ① 제2조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안내문 등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실 벽면, 출 입문 등 고객들이 알아보기 쉬 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취급시간 공지) ① <u>제2조</u> <u>및 제3조</u>-----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별표 1]

□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관서

번호	총괄국명	대상국명	관서급	점심시간 휴무 운영시간	시행일
1	서울서초	서울가정 행정법원	출장소	12:00 ~ 13:00 (1시간)	'19. 5. 1.
2	광화문	서울삼청동	6급	12:00 ~ 13:00 (1시간)	'21. 10. 1.
3	서울광진	서울마장동	6급	12:00 ~ 13:00 (1시간)	'21. 10. 1.
4	서울성북	서울동소문동	6급	12:30 ~ 13:30 (1시간)	'21. 10. 1.
5	서울서초	서울우면동	6급	12:00 ~ 13:00 (1시간)	'21. 10. 1.
6	광화문	서울송인동	6급	12:00 ~ 13:00 (1시간)	'21. 10. 1.
7	서대문	서울 연세대학교	6급	11:30 ~ 12:30 (1시간)	'22. 7. 4.
8	서울은평	서울연신내	6급	12:00 ~ 13:00 (1시간)	'22. 7. 4.
9	서울영등포	국회구내	6급	12:30 ~ 13:30 (1시간)	'22. 7. 4.
		의원회관 (출장소)	관내 소속 (출장소)	11:30 ~ 12:30 (1시간)	'22. 7. 4.
10	서울강남	서울개포1동	6급	12:00 ~ 13:00 (1시간)	'22. 7. 4.
11	서울강남	서울일원동	6급	12:00 ~ 13:00 (1시간)	'22. 7. 4.
12	서울강남	서울일원본동	6급	12:30 ~ 13:30 (1시간)	'22. 7. 4.
13	서울성북	고려대학교	6급	12:00 ~ 13:00 (1시간)	'22. 7. 4.
14	서울송파	서울잠실4동	6급	12:00 ~ 13:00 (1시간)	'22. 7. 4.
15	서울양천	서울남부지법	출장소	12:30 ~ 13:30 (1시간)	'22. 7. 4.
16	서울동작	서울노량진	6급	12:00 ~ 13:00 (1시간)	'22. 7. 4.
17	서울서초	서울반포	6급	12:00 ~ 13:00 (1시간)	'22. 7. 4.
18	서울노원	서울월계3동	6급	11:30 ~ 12:30 (1시간)	'22. 7. 4.

번호	총괄국명	대상국명	관서급	점심시간 휴무 운영시간	시행일
19	서울도봉	서울북부 지방법원	6급	12:00 ~ 13:00 (1시간)	'22. 7. 4.
20	서울구로	서울구로1동	6급	11:30 ~ 12:30 (1시간)	'22. 7. 4.
21	국제우편 물류센터	영업과	4급	12:00 ~ 13:00 (1시간)	'22. 7. 4.
22	동대문	서울제기동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23	동대문	서울이문동 (업무중지 중) '24.7.1. 업무개시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24	서울광진	서울왕십리	6급	11:30 ~ 12:30 (1시간)	'23. 1. 2.
25	서울광진	서울금호동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26	서울광진	서울 한양대학교	6급	11:30 ~ 12:30 (1시간)	'23. 1. 2.
27	서울마포	서울서부 지방법원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28	서울관악	서울신림동 (업무중지 중) '25.4.1. 업무개시 (예정)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29	서울관악	서울은천동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30	서울관악	서울봉천동	6급	12:30 ~ 13:30 (1시간)	'23. 1. 2.
31	서울관악	서울대학교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32	서울은평	서울수색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33	서울성북	서울종암동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34	서울강동	서울상일동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35	서울강동	서울고덕동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36	서울강동	서울강일동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번호	총괄국명	대상국명	관서급	점심시간 휴무 운영시간	시행일
37	서울송파	서울오륜동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38	서울송파	서울동부 지방법원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39	서울서초	서울법원청사	5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40	서울노원	서울수락산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41	서울노원	서울상계1동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42	서울노원	서울상계3동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43	서울노원	서울중계동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44	서울중랑	서울중화동	6급	12:30 ~ 13:30 (1시간)	'23. 1. 2.
45	서울도봉	서울도봉1동	6급	12:30 ~ 13:30 (1시간)	'23. 1. 2.
46	서울도봉	서울번2동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47	서울도봉	서울번3동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48	서울도봉	서울삼양동	6급	12:30 ~ 13:30 (1시간)	'23. 1. 2.
49	서울구로	서울시흥1동	6급	11:30 ~ 12:30 (1시간)	'23. 1. 2.
50	서울도봉	서울송천동	6급	12:00 ~ 13:00 (1시간)	'24. 6. 3.
51	서울도봉	서울쌍문2동	6급	12:00 ~ 13:00 (1시간)	'24. 6. 3.
52	서울도봉	서울방학동	6급	12:00 ~ 13:00 (1시간)	'24. 6. 3.
53	서울도봉	서울창5동	6급	12:00 ~ 13:00 (1시간)	'24. 6. 3.
54	서울성북	서울석관동	6급	12:00 ~ 13:00 (1시간)	'24. 6. 3.

번호	총괄국명	대상국명	관서급	점심시간 휴무 운영시간	시행일
55	서울성북	서울정릉	6급	12:00 ~ 13:00 (1시간)	'24. 6. 3.
56	서대문	서울연희동	6급	12:00 ~ 13:00 (1시간)	'24. 6. 3.

[별표 2]

□ 우체국 공지사항 1(점심시간 휴무 관련 상시 게시)

1. 디자인 및 크기 : 우체국 디자인표준 매뉴얼을 기본으로 우체국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크기를 결정
2. 내용 : 우체국 업무시간, 점심휴무 시간, 점심휴무 시 이용가능 우체국 정보 등을 기재

(예시)

◇ 우편업무시간

	09:00 ~ 12:00
월 ~ 금	13:00 ~ 18:00
	* 12:00 ~ 13:00(점심시간 휴무)

◇ 금융업무시간

	09:00 ~ 12:00
월 ~ 금	13:00 ~ 16:30
	* 12:00 ~ 13:00(점심시간 휴무)

점심시간 동안 긴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인근 OO우체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근우체국 안내: OO우체국 (거리 00km, 소요시간 00분, ☎ 000-0000)

□ 우체국 공지사항 2(특별한 사유 발생 시, 업무시간 조정 당일 게시)

안 내 문[예시]

OO 우체국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우편 및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업무시간을 조정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시간 : '24. 00. 00.(금), 09:00~17:00

※ 점심시간 휴무 : 12:00 ~ 13:00

긴급한 용무가 있으신 고객님께서서는 인근 OO우체국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인근우체국 안내 : OO 우체국(거리 000km, 소요시간 000분)
(☎ 000 - 0000)

우체국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앞으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년 00 월 00 일

OO 우체국장